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 - 218
----------	---------

제출연월일 : 2001. 1.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 제안이유

-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혁하면서, 지역을 특색있고, 살맛나고,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이웃사랑의 공동체 운동인 내사랑동두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내사랑동두천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내사랑동두천운동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
- 다. 내사랑동두천운동 3대 실천분야를 정함(안 제17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에 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동두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내사랑동두천운동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실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내사랑동두천운동”이라 함은 주민 모두가 동두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함으로써 동두천에 사는 것을 긍지와 보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시민적 지역사랑운동을 말한다.

제2장 협 의 회

제 3 조 (설치) 내사랑동두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언·권고·건의·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내사랑동두천운동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권고·건의·심의한다.

1. 내사랑동두천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2.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내사랑동두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 5 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과 교육계, 언론계,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인사중 시장이 위촉하고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회장의 직무등)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간사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정담당이 된다.

제 9 조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실무위원회

제10조 (실무위원회) 내사랑동두천운동의 실천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사랑동두천운동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사랑동두천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
2. 내사랑동두천운동의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추진단체간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결정사항의 추진
4. 기타 내사랑동두천운동 실천에 관한 사항

제12조 (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간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등) 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실무자가 된다.

제16조 (해촉) 시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실천사업

제17조 (실천과제) 시장은 내사랑동두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실천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1. 내고장 사랑하기
2. 내고장 자랑하기
3. 더불어 함께살기

제18조 (사업비지원) 시장은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내사랑동두천운동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내사랑동두천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결산서등 제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종료 후 동두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